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58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216호(1996.08.01.)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235호(2000.08.16.)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결정 이후,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57호(2008.05.08)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30호(2008.11.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12호(2009.08.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25호(2011.11.0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78호(2013.03.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59호(2013.5.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67호(2013.10.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43호(2014.02.0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28호(2014.04.0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1호(2014.06.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75호(2014.11.0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99호(2015.04.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05호(2015.07.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98호(2015.09.2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74호(2017.05.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02호(2017.11.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58호(2019.05.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404호(2019.12.1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1호(2020.01.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00호(2020.07.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62호(2020.11.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98호(2020.12.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24호(2021.03.11.) 등으로 변경 결정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변경없음)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변경)

-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15)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없음)
- 16)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 가)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획지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구번호	지 번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N	상봉동 101-2 일원	102-4, 102-82 획지선 지정	102-4, 102-82 획지선 지정 102-3, -4, -82 공동개발 지정	준치관리3구역

※ 변경사유 :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및 대지 정형화를 위한 획지와 인접필지 공동개발 지정

17) 기타 계획(광고물 계획, 폐기물 처리 계획, 정보화계획, 방재계획, 에너지 순환계획,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신·재생에너지 적용계획, 특성화 계획, 여성 친화적 촉진구역 건설계획, 친환경 건축물계획) (변경없음)

18)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 ~ 다)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 가구 결정조서 (변경)

가구번호	가구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필 지	계	
N (준치관리 3구역)	25,214.1	기 정	상봉동 102-4	166.6	322.3	획지선 지정
			상봉동 102-82	155.7		
		변 경	상봉동 102-4	166.6	546.0	획지선 및 공동 개발 지정
			상봉동 102-82	155.7		
			상봉동 102-3	223.7		

※ 변경사유 :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및 대지 정형화를 위한 획지와 인접필지 공동개발 지정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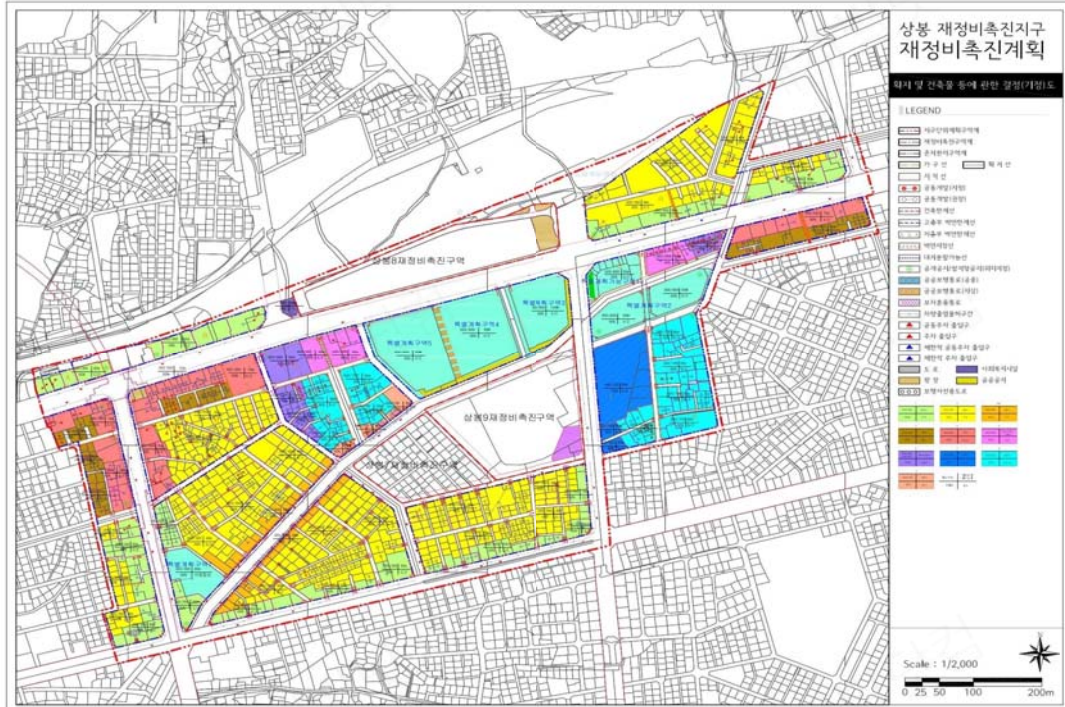
마.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은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도서」에 명시

바.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 생략 (비치된 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8) 및 중랑구청 도시계획과(☎02-2094-2194)에 각각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변경)

